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3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용혜인 · 서미화 · 황명선
서왕진 · 윤종오 · 황운하
한창민 · 손 술 · 정혜경
백혜련 · 전종덕 · 김재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,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.

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·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,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·협력사

업을 추가하고,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39조1항 및 4항, 제78조제1항 등).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중앙회”를 “조합과 중앙회”로, “간의”를 “및 외국의 협동조합 간의”로 한다.

제37조제4항 중 “, 제413조”를 “, 제412조의5, 제413조”로 한다.

제39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중전의 제7호) 중 “제6호까지의”를 “제8호까지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지역사회 개발사업

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류·협력사업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

다.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

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마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

바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 또는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

사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기업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

10.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

④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78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제7호까지의”를 “제9호까지의”로 한다.

8.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

9. 제39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교류·협력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) ① <u>중앙회</u> 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<u>간의</u> 상호협력, 이익증진,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5조(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) ① <u>조합과 중앙회</u> 는----- ----- <u>및 외국의 협동조합</u> <u>간의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 제37조(감사의 임무) ① ~ ③ (생략) 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제391조의2, 제402조, 제412조의2, <u>제413조</u>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제37조(감사의 임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, <u>제412조의5, 제413조</u> -----.
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39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지역사회 개발사업</u> 8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류·협력사업</u> <u>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</u>

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
기업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
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
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
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및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
합회

다.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
호에 따른 마을기업

라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마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
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과
연합회 및 전국연합회

바.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
8조 또는 「사회적기업 육
성법」 제5조의2에 따라
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
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
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

사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
특별법」 제16조의10에 따
른 소셜벤처기업

아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
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
에 부대하는 사업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<신 설>

제78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중앙
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
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~ 7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
단체

9. -----제8호까지의-----

10.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
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원
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
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
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자본
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
출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
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
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
다.

제78조(사업의 종류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
사업

9. 제39조제1항제8호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
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교류 ·

8. 제1호부터 <u>제7호까지의</u> 사업 에 부대하는 사업 9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	<u>협력사업</u> 10. -----<u>제9호까지의</u>----- ----- 11. (현행 제9호와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